

2-2-22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명 개정 2021.2.25>

<2020.5.12. 전부개정>

<2021.2.25.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예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 학칙 제38조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② 원격중심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수시 및 정기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수업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적 원격중심 수업과 콘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동시적 원격중심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3.8.7>

③ 원격활용 수업은 수시 및 정기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수업활동의 일부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혼합된 수업으로서 평가활동을 제외한 수업활동의 50% 이상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2.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원격으로 수업내용을 사전에 학습한 뒤 강의실에서는 문제해결 및 토론식 수업 등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
3. 하이브리드 러닝(Hybrid Learning):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개설하는 모든 원격수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8.7>

제2장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센터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4.4>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교육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3.8.7>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은 당

연직으로 하며, 수업만족도 등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학생위원은 미래교육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원격교육 기본 계획 및 정책수립,
2. 원격수업 개설 심의 및 운영, 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발전방안 모색과 기관 교류 및 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 원격교육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개시 10주 전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의견 수렴과 환류에 관한 회의 시에는 학생위원의 참석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

제8조(수업개설 및 이수) ① 원격수업은 매 학기 본 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수업으로 개설한다. <개정 2023.8.7.>

② 원격수업은 학칙 제49조에 의한 수강신청 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운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우리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타 대학 학생 및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9조(개설절차) ① 미래교육센터장은 매학기 개시 12주 전에 원격수업 개설 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23.4.4>

② 원격수업을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교육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4>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격수업의 개설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원격중심 수업의 개설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정한다. 단, 필요시 비전임교원 및 강사도 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설 할 수 있다.

2. 원격중심 수업은 교양 개설학점 및 학과별 전공 개설학점의 각각 100분의 30이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3. 원격중심 수업은 교원별로 매 학기 6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 교과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3회 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원격수업의 개설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⑤ 원격활용 수업은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원격수업 운영

제10조(수업구성) ① 원격수업의 한 학기 수업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업 구성은 1차시 1학점 당 동시적 수업, 강의영상 및 과제, 토론, 퀴즈 등의 온라인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총 50분 이상으로 구성하되, 비동시적 원격중심 수업의 강의영상은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다. 단, 원격활용 수업은 25분 이하로 제작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③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평균 50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수업시간을 인정한다. <개정 2023.8.7>

1. 강의영상은 재생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
2. 동시적 원격수업은 운영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
3. 외부 영상은 강의영상의 100분의 20까지 인정
4. 과제는 1과제 당 30분으로 인정
5. 토론은 1토론 당 10분으로 인정
6. 퀴즈는 1문항 당 3분으로 인정

④ 원격수업의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학습자에게 교육개요 및 학습목표 제공
2. 학습자에게 교육자료 제공 단,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저작권 관련 법규 준수
3. 학습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4. 단순 학습자료(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문서 등) 제공만으로 수업대체 금지
5. 한 학기 1회 이상 학습자와 대면강의, 질의응답, 토론, 대화의 시간 등 상호작용 준수 (수업계획서에 명시, 사전공지)
6. 기타 공지사항 등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방법 및 시기는 매 학기 일반교과 수강신청과 같다.

② 원격중심 수업 수강은 개인별 졸업이수 학점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7>

제11조(수업운영) ① 원격수업은 동시적 원격수업과 사전제작 콘텐츠(VOD) 등을 활용한 형태로 운영한다. 단, 사전제작 콘텐츠(VOD)를 활용하는 비동시적 원격수업은 우리대학 학습관리시스템(JU-ECAMPUS)에서 운영하되,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점 교류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7>

② 원격수업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 상의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동시적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전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원은 매 차시 수업 개시 전까지 강의콘텐츠를 JU-ECAMPUS에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③ 교원은 수강생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응답, 토론, 과제 및 퀴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의 교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담당 교수가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다.

1. 텍스트, 음성,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도구 이용
2. 수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3. 수업 계획에 따른 평가활동 등 출석수업의 병행
4. 기타 원격수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사전제작 동영상 콘텐츠가 3년이 경과된 경우, 담당교수는 콘텐츠 갱신 내역을 원격수업개설신청서에 기술하여 미래교육센터에 제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⑥ 법정감염병, 국가 재난 등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2조(출결관리) ①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기준은 수강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라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시간 원격수업의 출결기준은 「출결관리 내규」에 따른다.

수강시점	학습 진도율		
	90% 이상	50%이상 90% 미만	50% 미만
기간 내	출석	지각	결석
기간 후	지각	결석	결석

② 기타 출결관리 사항은 우리 대학 「출결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13조(성적평가) ① 원격수업의 성적 평가는 출석율, 지필고사, 과제, 토의 참여 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② 원격수업의 지필고사는 출석을 통한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과 수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에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③ 기타 성적 평가 운영 및 관련 자료 보관은 본 대학 학칙,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4조(수업평가) ① 원격수업의 수업평가는 학기당 2회(중간, 기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업평가는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 방법은 수업평가규정 제3조를 따른다.

제15조(분반 및 폐강기준) 원격수업의 분반 및 폐강기준은 수업관리규정 제7조를 따른다. 단, 이론을 주로 하는 원격중심 수업인 경우 140명 이내로 1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6조(원격수업 질관리) ① 미래교육센터장은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자가점검 설문을 실시하고 그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4>

② 위원회는 전항의 설문결과에서 일정 점수 이하인 담당교원에게 수업개선을 권고한다. <개정 2023.8.7>

③ 비동시적 원격수업을 위해 개발한 사전제작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제2조, 제10조,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2. 전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 강좌
3. 강의 영상 품질 불량, 저작권 미준수 등 콘텐츠 품질이 낮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
4. 수업평가 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좌
5. 통상적인 사회규범, 인권, 윤리성 등에 해(害)를 끼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⑤ 원격수업 질관리를 위하여 학기말 교과목 수업개선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업개선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3.8.7>

제17조(관리 및 운영지원)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미래교육센터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교원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수업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전자계산소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8.7>

② 원격수업 강의콘텐츠 제작 및 매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실무팀은 미래교육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4.>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교과목은 3개 학기 이상 의무적으

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7.>

- ④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에 대한 시수 인정 및 강의로 지급은 우리 대학 「책임시수 및 강의로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수대학교 학칙」, 「예수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수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8.7.>

제19조(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① 본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대학이 소유하며, 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격수업을 개발하는 교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발생 시 법적 책임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 <개정 2023.8.7.>

제20조(준법의무) 원격수업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고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수자나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고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 JU-ECAMPUS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동시적 원격수업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교과목에 수강신청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